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31

발의연월일: 2025. 5. 29.

발 의 자:양문석·박수현·민형배

양부남 • 서미화 • 조계원

부승찬 · 강유정 · 김재원

오세희 · 김 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 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 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3(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이하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의 접수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 조사 및 조치
 - ③ 게임물의 불법 이용을 인지한 자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④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지 등) 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u>		
	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		
	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		
	물을 이용하는 행위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9조의3(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		
	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		
	성하기 위하여 게임물불법이용		
	신고센터(이하 "게임물불법이		
	용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u>운영하여야 한다.</u>		
	②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의접수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및 조치
- ③ 게임물의 불법 이용을 인지 한 자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 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 다.
- ④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관 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 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게임물불법이용신 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고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 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
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